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등에 따라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학력격차가 크며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 등 장애인 고용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수요에 맞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중요성 및 요구가 커지고 있음

현행 대학의 통·폐합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르는 경우, (산업)대학-전문대학, 대학-산업대학 간 통·폐합 시 전문대학 또는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음

이에, 대학 통·폐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제외한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(산업)대학-전문대학 간 통·폐합, 대학-산업대학 간 통·폐합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또한, 대학 교육·연구 및 행정의 정보화가 가속화하고 역할이 증대하고 있어,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하고 그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별표1의3(통·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)에 비고를 신설함(안 별표1의3 개정)

-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정원 내 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뺀 입학

정원을 말함

- 통·폐합대학은 통·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 유지하도록 함

나. 별표2(교사시설의 구분)에서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 다음에 정보전산원을 추가함(안 별표2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입법예고

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.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 대학입학 전형시행계획의 정원 내 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인원을 뺀 입학정원을 말한다. 통·폐합대학은 통·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 유지한다.

별표 2 지원시설란의 전자계산소를 삭제하고, 교육기본시설란의 도서관을 도서관·정보전산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별표1의3. 통·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(표 생략) <u><신설></u>		별표1의3. 통·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(표 현행과 같음) <u>비고. 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감축</u> <u>비율이 적용되는 입학정원은</u> <u>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정원 내</u> <u>특별전형에 의한 장애학생 모집</u> <u>인원을 뺀 입학정원을 말한다.</u> <u>통·폐합대학은 통·폐합을 신청한</u> <u>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</u> <u>기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</u> <u>내 장애학생 모집인원의 합을</u> <u>유지한다.</u>		
별표2. 교사시설의 구분		별표2. 교사시설의 구분		
교사 시설	구분	교사 시설	구분	
교육 기본 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 <u>도서</u> <u>관</u> ·학생회관·체육관(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 태의 강당을 포함한다)·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로 하며,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 어야 한다. 1.열람실·정기간행물실·참고도서열람실·서고 및 사무실 2.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좌석	교육 기본 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 <u>도서</u> <u>관</u> · <u>정보전산원</u> ·학생회관·체육관(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포함한다)·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,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. 1.열람실·정기간행물실·참고도서열람실·서고 및 사무실 2.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좌석	
지원 시설	<u>강당·전자계산소</u> ·실습공장·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.	지원 시설	<u>강당</u> ·실습공장·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.	
연구 시설	(생략)	연구 시설	(현행과 같음)	
부속 시설	(생략)	부속 시설	(현행과 같음))	
비고 : (생략)		비고 : (현행과 같음)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08